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33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 남창진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철성, 박환희, 서상열,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왕정순,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숙자,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춘대,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진혁,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5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다수의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들고 있는 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함(안 제2조 ~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다. 기타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심신장애” 용어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호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심신장애로”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